

국제통상협력실소관
1995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기 획 경 제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목

차

1. 예산안 개요

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

나.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

2. 검토내역 및 의견

나.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95예산(안) 구성비 (%)		(제1회추경)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		증 감 %	
합 계	241	100.0	(147) 83	100.0	158	190.4
인 건 비	-	-	-	-	-	-
물 건 비	135	56	(35) 35	42.2	100	286.0
이 전 경 비	105	43.6	(107) 43	51.8	62	144.2
자 본 지 출	1	0.4	(5) 5	6.0	△ 4	△ 80.0
용 자 및 출 자						
보 전 재 원						
내 부 거 래						
예비비 및 기타						

○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1995년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94년도 당초예산액 8천3백만원의 190.4%에 해당하는 1억5천8백만원이 증액된 2억4천1백만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음.

2. 검토내역 및 의견

1995년도 국제통상협력실 예산안은

세계화·개방화 시대에 부응한 국제교류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통상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보여짐.

이러한 역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1995년도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예산안 규모는 1994년도 당초예산인 8천3백만원에 비하여 190.4%인 1억5천8백만원이 증액된 2억4천1백만원 규모로서 이는 도전체 일반회계 총예산액 5,569억8백만원에 대하여 0.04%의 비중을 점하고 있음.

○ 이를 성질별로 살펴보면,

- | | |
|--------|---------------------|
| · 물건비 | 1억3천5백만원 (286.0% 증) |
| · 이전경비 | 1억5백만원 (144.2% 증) |
| · 자본지출 | 1백만원 (80.0% 감)으로 |

이를 세분하여 분석해 보면

첫째, 물건비에 있어 전년도 예산액 3천5백만원의 286%에 해당하는 1억원이 증액된 1억3천5백만원 규모로

- 예산기능별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 국제교류

- | | |
|-----------------------|--------|
| · 일반수용비 | 1천2백만원 |
| · 공공요금 및 제세 | 4백만원 |
| · 급량비 | 3백만원 |
| · 관서당경비 | 3백만원 |
| · 임차료(아마나시현 직원 숙소임차외) | 2천1백만원 |
| · 국내여비 | 9백만원 |
| · 외빈초청여비 | 1천2백만원 |
| - 자매결연 민간단체 초청여비 | 6백만원 |

- 아마나시현 직원 파견 체제비 6백만원
- 특수활동비 5백만원
- 업무추진비 1천4백만원
 - 국제관계자문대사 활동지원 1천2백만원
 - 국제도시자매결연 추진 2백만원
- 통상관리
 - 일반수용비 1천5백만원
 - 국제통상추진위원회 참석수당 8백만원
 - 수출학교운영 강시수당 3백만원으로

이는 아마나시현과의 국제교류에 따른 직원숙소 임차료와 국제관계자문대사 활동지원비 수출상담실 운영 국제화추진위원회 참석수당등 필요성은 인정되나 국제우호명에대사 초청에 따른 경비가 계상되지 않아 행사에 차질이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소상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셋째, 이전경비에 있어 전년도 예산액 4천3백만원의 144.2%에 해당하는 6천2백만원이 증액된 1억5백만원 규모로

- 예산기능별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 국제교류
 - 국제협력자원 봉사원 출무보상 1천3백만원
 -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8천2백만원
- 통상관리
 - 도내거주 외국인 초청 1천만원으로

필요성은 인정되나 국제협력자원 봉사원 출무보상 사업비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고 사료되며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에 있어서는 '94년부터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에 대한 소상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넷째, 자산취득비에 있어 전년도 예산액 5백만원의 80.0%에 해당하는 4백만원이 감액된 1백만원 규모로

○ 국제교류

· 테이프 구입비

1백만원으로

나타나 있음.

이와같이 '95년도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예산안은 국제교류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통상관련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수사업비만 계상한 것으로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됨.